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성희롱 관련 법제 및 법리

이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행

강사 소개

변호사 이현우

- 법률사무소 동행 (변호사 이현우 법률사무소)
- 재단법인 동천 지역공익 변호사

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 간사
전) 부산광역시 인권위원
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 장애·이주·사회적 약자 - 사건을 중심으로 변론활동
-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성고충심의 외부전문위원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목차

1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 판단 기준

3 성폭력 관련 법제

4 판례 사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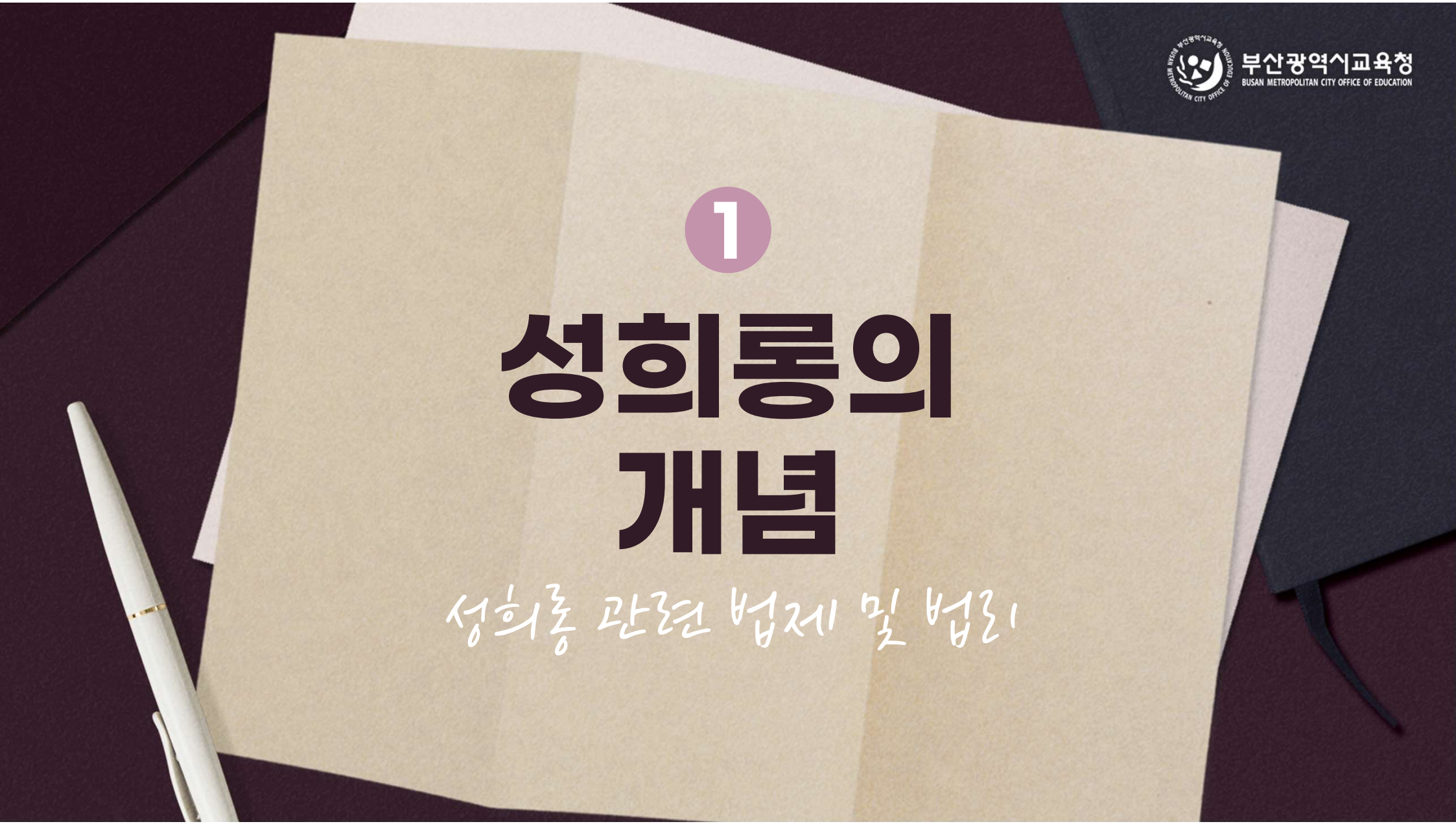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1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관련 법제 및 법리

*법은 만능이 아니다.

형사 피해 (사기)

피해발생 → 고소 → 경찰 조사 (1~3회) → 검찰 판단 → 재판

- 1심 → 2심 → 3심 (1, 2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각 6개월)
  3심 대법원 유죄 확정 : 피해 회복받을 수 있는가? (민사는 별도)
- 1심 → 2심 → 3심 (빠르게 끝나면 1년 6개월)
  3심 대법원 유죄 확정 : 피해 회복받을 수 있는가? (민사는 별도)
- 민사집행(재산이 없으면?) → 회복불가

성희롱의 개념(1)

일상 용어와 법률상 용어는 그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예 선의 / 악의

- 일상 용어 : 좋은 의도 / 나쁜 의도
- 법률 용어 : 모름 / 앎

➔ 법률상 용어는 **일상 용어와 의미 차이 존재**하므로 해석과 이해가 필요

성희롱의 개념(1)

성희롱의 언어적 개념 (표준국어대사전)

-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다.

"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반응"

➔ 언어적 사회적 개념은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음

➔ 분쟁 발생 시 통일적 기준 설정의 필요성 = 법적 개념

성희롱이 사안화 된 경우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법적 도구'를 사용

성희롱의 개념(2)

성희롱의 법률적 개념 (국가인권위원회법)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그 외에도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법」,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유사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1 관계성 2 구성원 3 직위 이용 4 업무 등 관련
5 성적 언동 6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

성희롱의 개념(2)

⑤ 성적 언동

- 육체적 성희롱 = 신체적 접근
- 언어적 성희롱 = 외모에 대한 지적 내지 비하 표현

  ➔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성적 언동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
- 시각적 성희롱 = 사진 전송
- 기타 성희롱 = 원하지 않는 만남 강요

성희롱의 개념(3)

성희롱은 아래 행위가 아니면 처벌 불가

- 성희롱 → 언어적 → 다른 사람이 같이 듣는 경우 **(모욕, 명예훼손)**
- 성희롱 → 전자통신으로 → 반복적 **(정보통신망, 스토킹 처벌법)**
- 성희롱 → 신체적 **(강제추행)**

다만, 피해자가 **"아동", "장애인"**인 경우에 성희롱만으로도 처벌(아동: 만 18세 미만의 사람)

➔ 아동과 장애인 보호의 필요성

➔ 학대신고 의무자: 아동 = 즉시, 장애인 =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성희롱의 개념(4)

- 성희롱의 개념 해석을 특정 개인의 기준에 맡기는 경우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움으로 법적으로 정의된 성희롱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황과 맥락 속의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예 A 사례면 성희롱 = X

-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면밀하고 세심히 접근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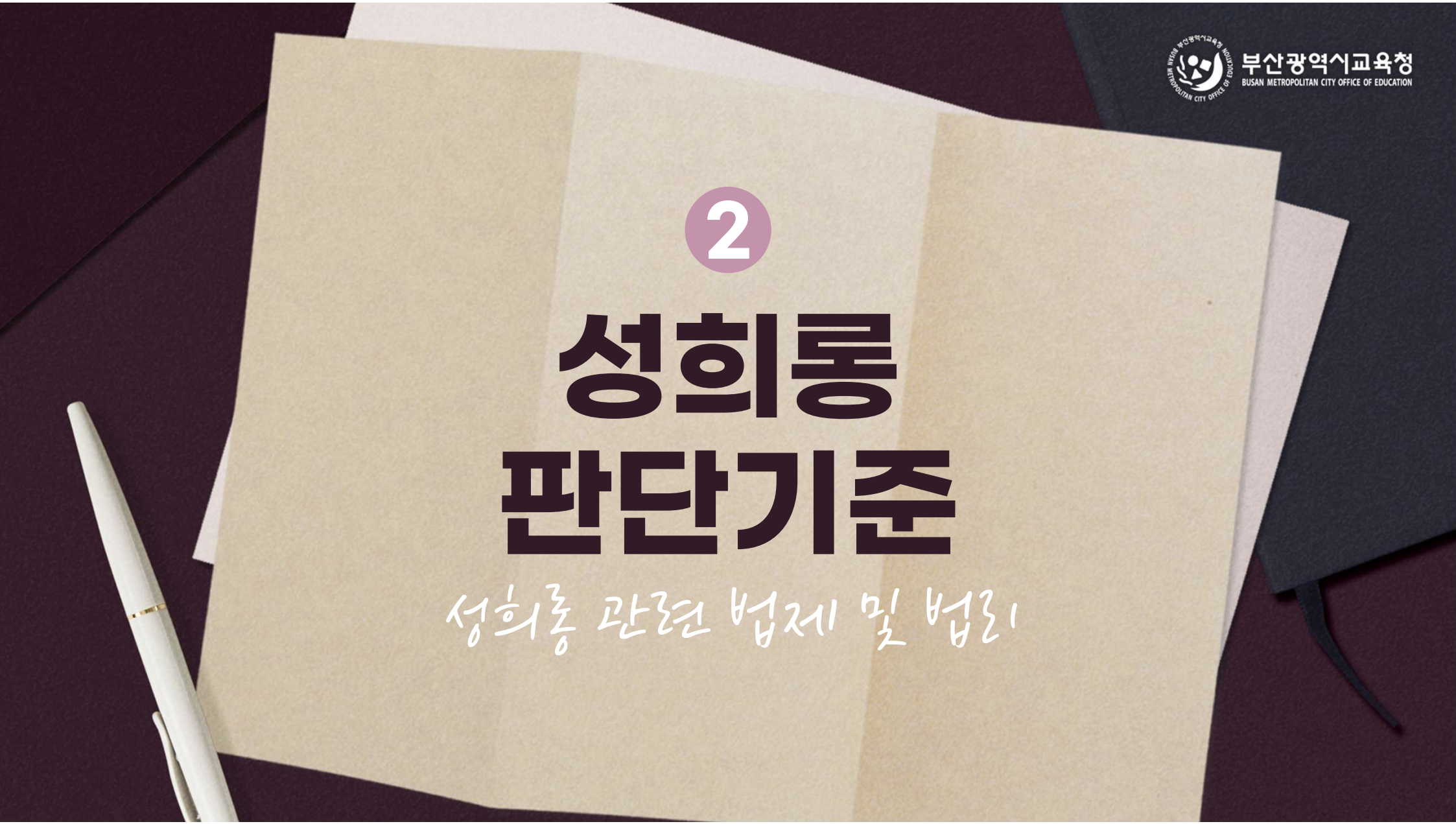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
성희롱
판단기준
성희롱 관련 법제 및 법리

성희롱 판단 기준(1)

법원 판단의 특징

- 법원의 판결은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잘 변화하지 않는다.
- 법은 보수적(용어 - 일제 강점기 법률용어, 현대 사용하지 않는 한자)

> 예 친족상도례 : 동거가족간 경제범죄 형면제 (= 처벌 X)
> 70여년 지속된 피해에도 법개정 X → 최근 헌법불합치

➔ 사회가 변화하면서, 입법으로 법체계가 변화하면서 판례도 변화

➔ 변화한 판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최신 판례(판단 기준)의 중요성!

성희롱 판단 기준(2)

판례의 기준

대법원 2005두6461 판결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000사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는 경우를 의미

❶ 성적동기 불필요, ❷ 당사자의 관계, ❸ 행위장소와 상황, ❹ 상대방의 명시적 추정적 반응, ❺ 행위의 내용과 정도, ❻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 등 참고하여, ❼ 000 사람의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는 경우를 의미

[❶ + (❷ ~ ❻)] ← ❼

성희롱 판단 기준(2)

❶ 성적동기 불필요(20여년 전부터)

- 내심의 의사를 알기 어려움 = 증명의 어려움

> 예 폭행의 고의 → 사망의 결과 = 살인죄?, 폭행치사?

➔ 거짓말로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

➔ 부인하더라도 다양한 증거에 따라 고의 인정 가능

- 성적 괴롭힘, 성희롱 등이 성적 의도 없이 발생할 수 있음

성희롱 판단 기준(3)

- 남녀간의 관계를 투쟁적, 대립적 관계로 평가하는 여성주의적 관점만을 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남녀의 관계를 공동적, 화합적 관계로 이해하는,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서울고등법원 94나15358)

↓

-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대법원 95다39533)

↓

-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대법원 2005두6461)

성희롱 판단 기준(4)

-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대법원 2005두6461)

➔ 객관적, 일반적, 평균적 사람

➔ 해당 사실을 듣고 평가하는 '나' = X

➔ 객관적으로
상대방 (학생)
같은 처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 사람

성희롱 판단 기준(5)

가장 중요한 전제(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성희롱 판단 기준(5)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 (성인지 감수성)

1. 가해자 중심 문화와 사회 구조
2.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피해 빈번
3. ①+② 으로 피해를 당하고 관계유지하는 경우 존재
4.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특정 계기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5. 신고 후에도 소극적 태도 보이는 경우 존재
6. 피해자의 반응·대응은 사람마다 다름

→ **개인적 인식과 편견을 배제하여야 함**

성희롱 판단 기준(5)

영국 법원의 기준

❶ 피해자마다 심각한 성범죄의 트라우마에 반응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므로, 전형적인 반응이란 존재할 수 없고, ❷ 성범죄 피해 이후 즉각적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피해자도 있는 반면,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갖게 되는 수치심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이를 고소하는 시점이 늦어지는 피해자도 있으며, ❸ 비록 고소하는 시점이 늦었다 하더라도 그러한고소가 반드시 무고는 아니라고 판시

= 성인지감수성 (해외에서는 이전부터 인정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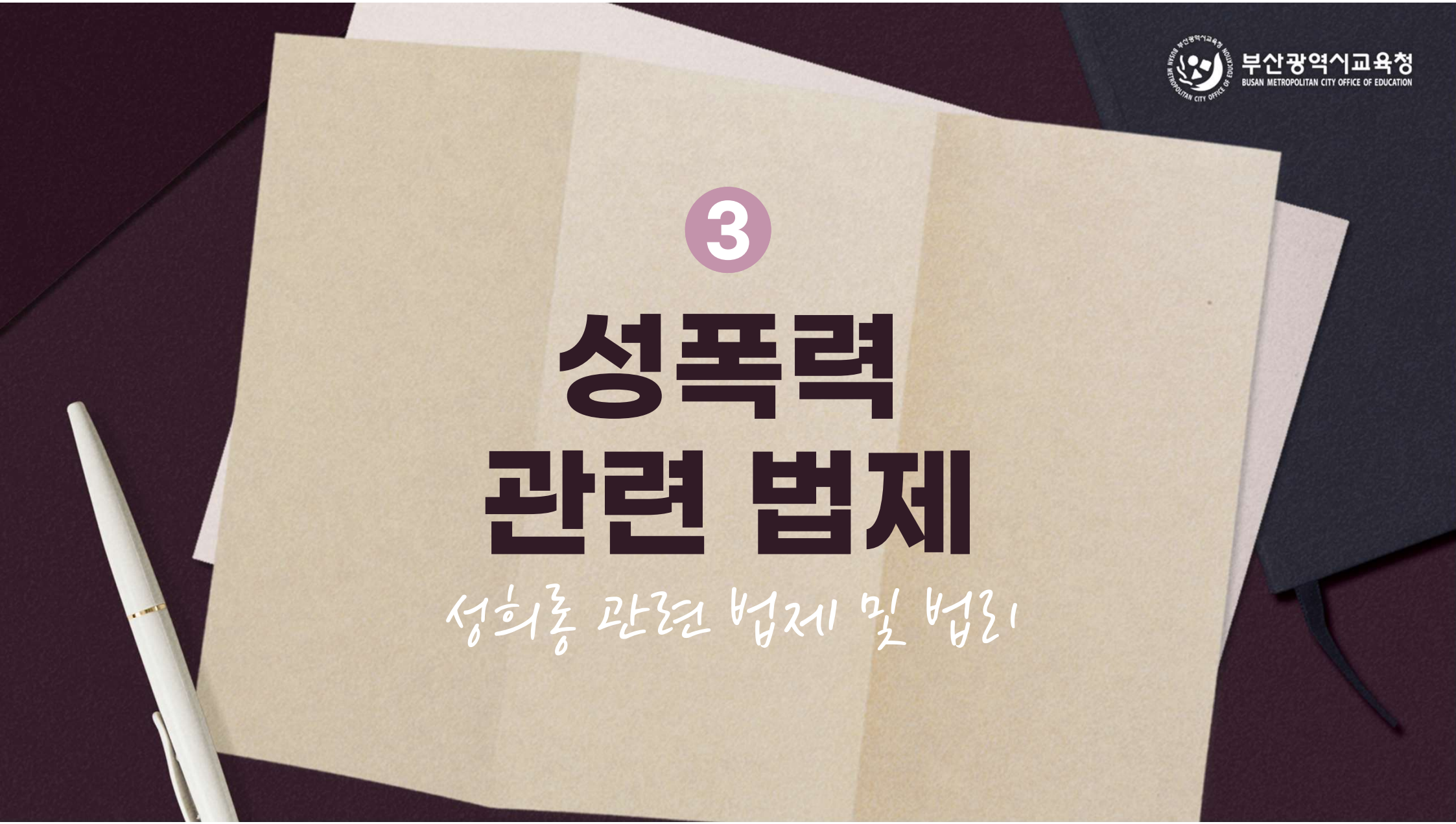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3
성폭력
관련 법제
성희롱 관련 법제 및 법리

성폭력 관련 법제(1)

- 형법,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 1개의 행위가 여러 법령이 적용되는 행위로 판단 가능
  (학교 내 불필요한 성적 언동 = 성희롱 + 강제추행)
- 형사사법절차 진행 (경찰수사, 검찰검토, 재판, 판결)

  ➔ 피해자의 진술 (가장 중요한 증거)

  ➔ 유무죄 판단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수준의 증명 필요)

성폭력 관련 법제(2)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 카메라촬영죄
- 미성년자 의제간음, 추행

  만 13세미만 피해자 (피의자 연령 제한 없음)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피해자 (피의자 연령 제한 만 19세 이상)
- 스토킹처벌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아동청소년 성매매

➔ **여성아동청소년계 배당.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조사, 형량 ↑**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성폭력 관련 법제(2)

범죄유형별(1)	2022 검거인원_전체 (명)	검거인원_여자 (명)	검거인원_남자 (명)	여자비율 (%)
계	48,584	4,147	44,040	8.5
성폭력	39,017	1,515	37,153	3.9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성폭력 관련 법제(2)

카메라촬영죄 (카촬, 불법촬영)

❶ 의사에 반하여 촬영
❷ 의사에 반하여 반포, 유출
❸ 소지, 구입, 저장, 시청

➡ 처벌

허위영상물

❶ 반포를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허위 영상물 제작
❷ 의사에 반하여 반포, 유출

➡ 해외 계정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경우 가해자 특정 어려움

성폭력 관련 법제(3)

스토킹 처벌법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또는 가족에 대하여, 아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물건이나 메세지를 전달
- 주거 등의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의 훼손

→ **명시적 거부의사 문자나 카톡으로 표현해 두어야 법적용이 명확**

성폭력 관련 법제(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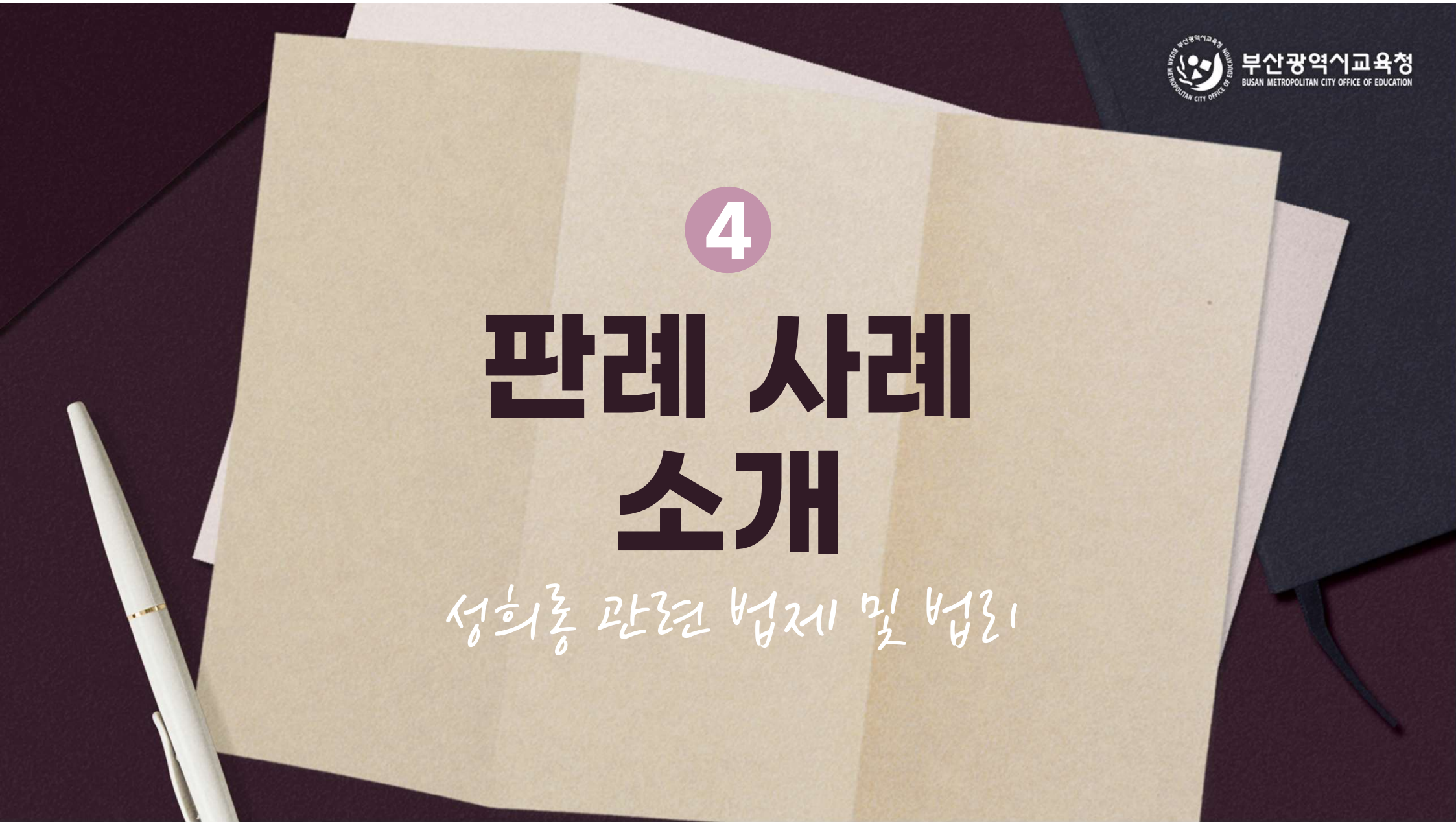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4
판례 사례
소개
성희롱 관련 법제 및 법리

사례 접근에 있어 참고사항(1)

신고 → 조치 → 조사 → 주장과 증거 → 사실인정 → 판단 → 조치사항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 준수'

- 행위자의 성적 의도
- 증거 판단 (피해자의 진술, 행위자의 진술)
- 자유심증주의와 고도의 개연성
- 민사·행정 VS 형사
- 무죄추정의 원칙

사례 접근에 있어 참고사항(2)

- 성적 의도나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5도6791)
-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4도52)
-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가볍게 배척할 순 없음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
-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 (헌법 제27조 제4항)
- 형사재판과 행정사건의 법리는 상이함으로 형사 무죄라고 하더라도 징계가능 (대법원 66누168 판결)

사례 접근에 있어 참고사항(3)

직장 내 성희롱

- 직급에 따른 권력구도, 업무 관련성

아동청소년 성희롱

- 학교 내 선생님-학생사이의 권력 구도
-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선생님의 지위

그 외

- 장애인,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피해자다움에 대한 판결

1. 신고가 늦은 경우
2. 피해 이후 가해자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경우
3. 가해자와 사이가 멀어지는 계기로 신고하는 경우
4. 성적 접촉은 거부하지만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5. 성폭행 피해 이후 가해자를 다시 찾아가 항의한 경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참조)

*장애인에 대한 판결들

1.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유도 암시되었는지 등)
2. 공소사실의 특정성 완화
3. 장애 인지적 감수성

대법원 2017도16186 판결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 그러한 모습과 정도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례 소개(1)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피고인은 중학교 OO교사이다. 피고인은 복도에서 피해자 A(15세)로부터 초코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수업 시간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던 중 칠판에 좌표를 그리면서 포물선을 여성 가슴 모양으로 그린 후 "아이참,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수업 시간에 늦은 피해자 B(15세)와 함께 수업하기 위해 교실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리 더 이뻐졌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에 대고 깍지를 끼었다. 피고인은 수업 진행 중 방학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학생들과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 C(14세)가 방학 중 피해자 D(14세) 등과 함께 워터파크에 갔다는 말을 하자 "너희들 비키니 입었어?"라고 말하여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315)

사례 소개(2)

- **<준강제추행>**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

피고인은 C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D(여, 18)는 1년 전 피고인이 담임이었던 반의 학생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일 때부터 '미래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와 여러 개의 약속을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였음. 그 약속 중의 하나로 피해자가 졸업한 후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어느 한 사람이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무박 드링크'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1:1 E 채팅창에 공지사항으로 띄우기도 함.

피고인은 D가 졸업 후 대학 진학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학교를 찾아오자, '무박 드링크'를 하기로 약속하자고 재차 말함. 이후 피해자와 약속을 잡고 연극관람을 한 후, 고깃집을 시작으로 세 차례 식당을 옮기며 술을 마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호불상의 DVD방에 데려갔다가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보이자,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짐.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 (부산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고합519 판결)

- **처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례 소개(3)

- **<강제추행>**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등 부위,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임. 피고인은 F중학교 복도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의 머리와 등 부위 중 브래지어 끈이 가로지르는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교실에서 사물함 부근에 서 있는데 뒤에서 등을 치고 쓰다듬는 행위(E), 점심 식사 후 교실에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밥 먹었니?' 하면서 어깨동무하듯 어깨 부분을 툭툭 치면서 건드린 행위(F),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어디 가냐?'고 묻는 행위(G),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점심밥 잘 먹었어'라고 물어본 행위(H), 복도를 지나가는데 '밥 많이 먹었어?'라면서 손바닥으로 어깨에서 등까지 쓰다듬은 행위(1), 아침 조회가 끝나고 화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으며 '열심히 하네'라고 말한 행위(J), 과학 시간에 학습지를 풀게 한 후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는 행위(K) 등 총 4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3명을 추행함. (수원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80 판결)

• 처벌: 벌금 3,0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

사례 소개(4)

- **<미성년자 위력 추행>** 예체능 교수였던 자가 수업 지도를 빙자하여 추행

피고인은 B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근무하였고, 국악과 제자였던 C(가명)의 부탁으로 C의 딸인 피해자 D(여, 17세)에 대한 대학입시 지도를 맡게 됨.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복식호흡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배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가슴, 어깨가 움직인다. 안아봐라."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배와 피해자의 배가 닿도록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숨 쉬는 것을 느껴봐라."라고 말함.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진 후 "느껴봐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도록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거는 수업 공부이고 절대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끌어안음. 피고인은 국악 교육을 빙자하여 1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함.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합538 판결)

- **처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피고인에 대한 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과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

사례 소개(5)

- **<미성년자 위력 추행>** 학원 원장이 원생인 피해자에게 어깨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추행

피고인은 'D'라는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16세, 여)는 학원의 학원생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평소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학원에서, 수업 도중 피해자에게 피곤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며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누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별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 (춘천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고합57 판결)

- **처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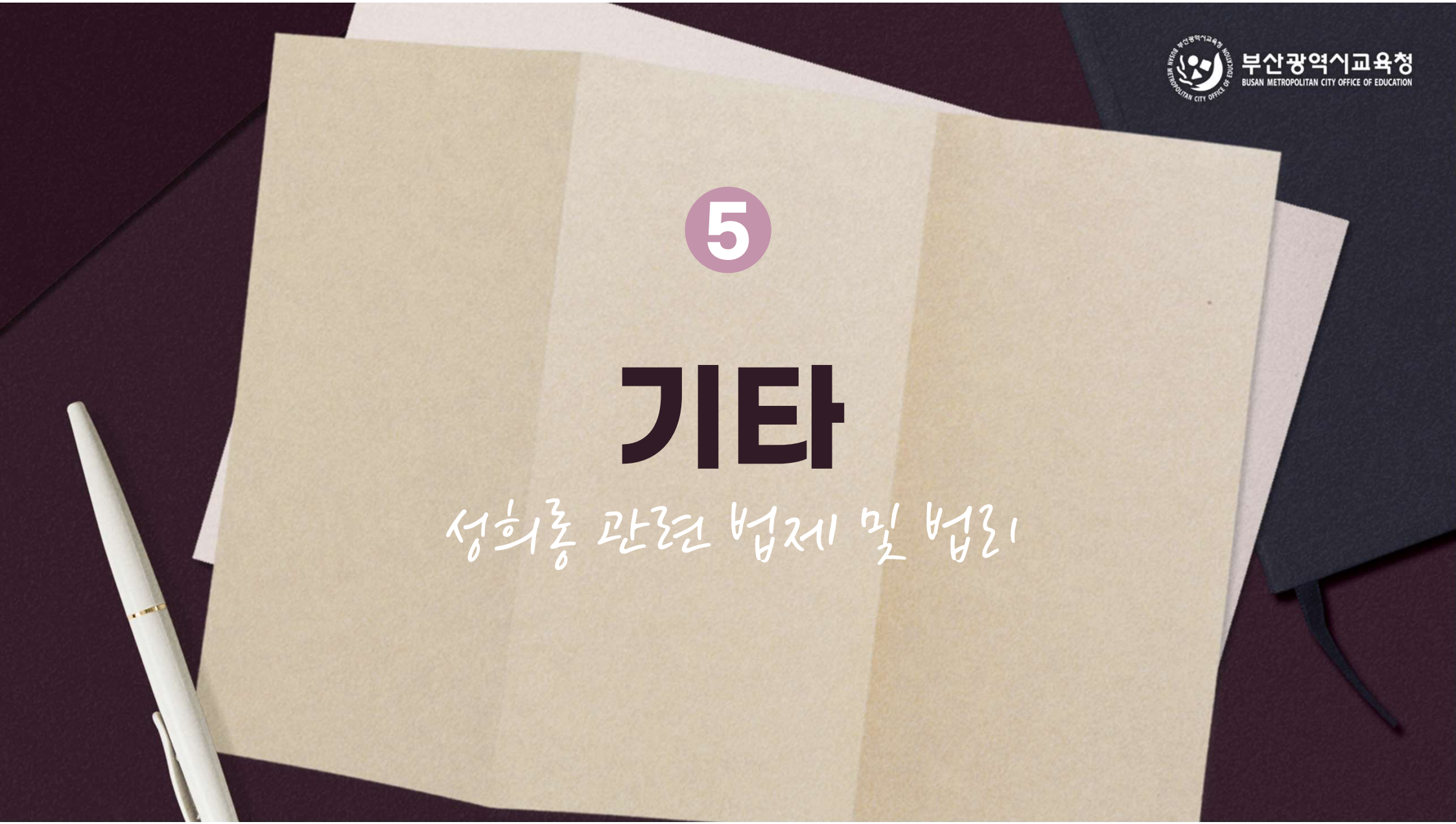

5

기타

성희롱 관련 법제 및 법리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감사합니다.